

1. 의결주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
(안 별표 1의2, 별표 2)

-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

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5. 9. 19. ~ 10. 2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7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구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

신문”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34조제6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을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박사학위를”을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로 한다.

별표 2 제2호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를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특별자치도인”을 “특별자치시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지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⑤ (생략)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 ----- ----- ----- ----- <u>.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관리법령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략) 7.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8조(폐기물관리법령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 ----- ----- ----- <u>.</u> 1. ~ 6. (현행과 같음) 7. ----- ----- ----- <u>한국환경연구원</u>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 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 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 ⑥ (생략)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생략) <신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	-- <u>일반일간신문</u>----- -- 3. ----- -----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 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 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 ---- <u>일반일간신문</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 을 감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 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한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
---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6. _____

룰」에 따라 설립된 <u>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u>	----- <u>한국환경 연구원</u>
-------------------------------------	---------------------------